

보행자의 보행권을 지켜주세요~

주·정차절대금지구역 6구역으로 확대! 신고기준 1분으로 통일!

-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, 교차로 등 주·정차절대금지구역 인도를 포함해 6구역으로 확대
-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 (1분 이상 불법 주·정차 금지구역에 주·정차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)



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
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불법주정차 6대 금지 구역입니다

소화전 주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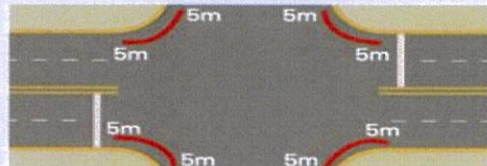
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,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


승용차 8만 원 / 승합차 9만 원

과태료

교차로 모퉁이



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



승용차 4만 원 / 승합차 5만 원

과태료

버스정류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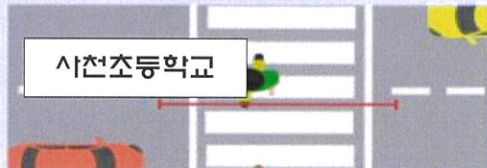
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


승용차 4만 원 / 승합차 5만 원

과태료

횡단보도



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



승용차 4만 원 / 승합차 5만 원

과태료

어린이보호구역



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



승용차 12만 원 / 승합차 13만 원

과태료

인도(보도)



보행자의 통행을 막고,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



승용차 4만 원 / 승합차 5만 원

과태료